

제182회 거창군의의회

【 임시회 】

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 
(조례 1건)

거창군의의회

(산업건설위원회)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2 ~ 25	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	2

#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

(이성복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 25 호
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4. 12.

발 의 자 : 이성복·백범영·조기원 의원

## 1. 제정이유

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거창 농업인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직거래장터의 사업(안 제3조)

-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참여자 모집
-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, 정보수집
- 직거래장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

나.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 설치(안 제4조 ~ 제10조)

《구 성》

-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, 임기는 2년
- 위원장 : 농업기술센터소장,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
- 위원 : 군의원 1명, 농촌활력과장, 농업인단체 대표, 기타 전문지식인

《심의사항》

- 직거래 운영방향 결정

○ 직거래 품목 및 판매가격기준설정

○ 기타 필요한 사항

다. 농업인직거래장터의 운영(안 제11조 ~ 제17조)

○ 운영주체 :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

농업인단체, 생산자단체, 법인에게 위탁운영

○ 위탁기간 : 2년,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가능

○ 수탁자 의무 : 재산을 파손·망실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

○ 위탁취소 : 계약조건 위반,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등

○ 관 리 비 : 수탁자 부담

○ 운 영 비 :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
라. 준용규정(안 제18조)

○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○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2. 4. 13 ~ 4. 17 특이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 : 매년 20,000천원 예산소요(생략)

#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거창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거창 농업인 직거래장터(이하 “직거래장터”라 한다)는 군 일원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참여자 모집
2.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
3.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
4.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
5.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4조(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의 설치)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군의원 1명과 농촌활력과장, 농업인단체 대표, 농·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
2.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기준설정
3.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간사)**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직거래장터의 운영

**제11조(운영)** ① 직거래장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,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.

1. 농업인단체 또는 법인
2.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

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지도 및 감독)**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

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**제13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, 도난,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.

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위탁의 취소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

**제15조(관리비)**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, 상·하수도사용료, 폐기물수집수수료, 전화요금 등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운영비)**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수탁자의 행위제한)** ① 수탁자는 그 권리·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,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.

## 제4장 보칙

제18조(준용규정)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 - 사. 공유림 관리
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개발사업
 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 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 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 - 사. 자연보호활동
  - 아. 지방1급하천,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